# 「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O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8년 1월 4일, 평창군수 제출

O 회부일자 : 2018년 1월 11일 회부

O 상정일자: 제23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2018년 1월 11일 상정·의결)

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)

### 가. 제안이유

○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 나. 주요내용

- 보훈영예수당 상향 조정(안 제8조)
  - 10만원 ⇒ 15만원
- O 국가보훈대상자 신설(안 제8조제4호)
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O 수당의 지급제외 규정 수정(안 제10조)
  - 수당 지급대상자가 안 제8조 각 호의 법률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때에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

- 조문 일부내용 및 서식 개정(안 제8조, 제11조, 별지 제1호서식, 제2호서식)
  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["자(者)" ⇒ "사람"]
  -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성별구분란 추가

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음. 다만, 보훈영예수당이 50%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 최근 우리군 지급대상인원, 강원도내 시군별 지원현황, 국가 참전명예수당의 인상 추이 등을 참고하여 심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대하여는"을 "대해서는"으로, "10만원"을 "15만원"으로, "수당을 받는"을 "해당"으로, "사망할 경우에는"을 "사망한 때에는"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1호 중 "따른 보상을 받는 자"를 "해당하는 사람"으로, 같은 조 제2호 중 "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자"를 "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해당하는 자"를 "해당하는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수당의 지급제외)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법률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때에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이 조례"를 "제8조"로, "자가"를 "사람이"로. "수당을 환수하여야"를 "그 수당을 되돌려 받아야"로 하고. 같은 항 제1

호 중 "허위"를 "거짓"으로, "수당을 받은 경우"를 "지급받은 때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지급 받은 후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11조제1항제3호 중 "경우"를 "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"을 "제1항에 따라 환수할"로, "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"를 "제7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"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당의 지급금액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.

#### [별지 제1호서식]

보훈(참전)등록번호	

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								처리기간		
							30일			
신	성	명		생년	원일			성별	남,여	
청			우편번호 :							
인	주	소	강원도 평청	항군		습.1	면			
						(전	화번호		)	
예금	금융기관명				예금	종류				
계좌	계좌	·번호			예금주	-성명				
Г	- 퍼 키 -	7 71	ᆸᅕᆒᄭᆌ	പിറ	ח אור	المال	리윈 구제	الد عال عال	1 뒤 세	

「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음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평창군수 귀하

구비서류 : 1.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수 수 료

2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없

#### [별지 제2호서식]

보훈(참전)등	록번호

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							처리기간		
							30일		
유공자	성	玛		생내	견월일			성별	남,여
	주	소							
	사망	일자							
신청인	성	玛		년월일			성별	남,여	
	주	소					(전호	화번호 :	)
	유공자와의 관계				·기관 ·계좌)				

「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평창군수 귀하

#### ※ 구비서류

- 1.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2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